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ertification Exam, Education and Training  
of Private Investigator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ertification Exam, Education and Training  
of Private Investigator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 목차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글의 순서

## II.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 논의의 기초

1. 명칭의 문제
2. 민간조사관 제도 관련 법안

## III. 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론적 검토

1. 외국의 민간조사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
2. 국내 타 직역의 자격시험 제도

## IV.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제도의 모색

1.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모델
2. 민간조사관 교육훈련 모델

## V.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현대사회는 구성원 간 갈등과 법적 분쟁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변호사에 의한 법률 자문 외에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사회경제로부터 점증하는 사실조사 서비스(fact-finding service)의 요구에 수반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1960년대까지 ‘홍신소’ 내지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심부름센터’ 상호 아래 자유업 형태의 사실조사 서비스 시장(market)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조사 서비스시장은 그 영업활동을 감독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확장되었다. 더욱이 심부름센터들은 국가 행정당국으로부터는 별다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적 공백 하에서, 시장으로부터의 조사 서비스 요구와 높은 이윤동기에 追隨的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수요자 고객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인정보유출, 협박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서 적지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경제로부터 요구에 의해 지속적 성장경로를 걷고 있는 사실조사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등 빈발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1999년 한나라당

하순봉의원에 의해 공인탐정입법 초안이 마련된 이후 최근까지 민간조사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고, 이와 병행하여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학계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민간조사제도 자체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문제는 향후 제도 도입에서 더 나아가 민간조사제도의 치밀한 시행과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조사관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검증할 세부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양질의 서비스가 확보될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에 대한 전문성과 윤리성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며, 이는 곧 체계적 시험 및 교육 훈련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민간조사제도 중에서도 특히 민간조사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간조사제도 안착의 핵심인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적정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글의 순서

본 연구는 법과 제도(law and institution)의 정비 여하에 따라 상이한 민간조사제도의 성과(performance)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민간조사활동에 대한 감독·관리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rational choice new institutionalism) 접근방법에 의해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sup>1)</sup> 신제도주의 이론에 의할 때, 한 시스템의 성과는 신고전주의적 생산함수 이외에도 거래비용의 존재가 고려된 제도

1)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최초로 윌리엄슨(O. E. Williamson)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그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론이 정립되었고 또한 그 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Williamson, 1975, 1981).

및 그 행위자로서의 조직의 함수이기도 하며<sup>2)</sup>, 제도적·조직적 변수의 성공적인 선택 여부에 따라 시스템의 성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도에 대한 개념규정은 제도주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스(D. C. North)와 같이 제도를 “인간 상호관계의 틀을 형성하는 제약조건”으로 넓게 파악하는 견해보다는<sup>3)</sup> 오스트롬(E. Ostrom)의 경우처럼 제도를 법규와 같이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취하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은 먼저 II장에서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 논의의 기초로서 민간조사관 명칭의 문제와 민간조사제도 관련 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III장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론적 검토로서 외국과 국내 타 지역의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를 분석한 뒤, IV장에서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모델, 교육훈련 모델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2)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란 시장 거래에 수반되는 상품 가치의 측정비용(measurement costs)과 집행비용(enforcement costs)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거래를 위한 탐색 및 정보 비용(searching and information), 협상 및 결정 비용(negotiation and decision cost), 계약의 감시 및 집행 비용(policing and enforcement costs)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성과는 전통적인 생산비용함수뿐만 아니라 경제적 교환을 위한 거래비용의 크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North, 1990; Williamson, 1985; Eggertsson, 1990).

3) 노스는 역사적 안목 하에 제도 개념을 비교적 넓게 정의하여, 인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인위적 제약을 제도로 파악한다. 따라서 노스의 제도 개념 범주에는 법·규칙과 같은 공식적 제약(formal constraints) 뿐만 아니라 관습이나 행동양식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informal constraints)들도 포괄된다(North, 1990: 4).

## II.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 논의의 기초

### 1. 명칭의 문제

국가 혹은 공공부문이 주체가 된 사실조사와 달리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 주체가 되어 조사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수사나 조사업무를 하는 수사관 또는 조사관과 달리, 타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민간인의 자격으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 영어권 국가에서는 통상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라 부르고 있으며<sup>4)</sup> 이를 번역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흔히 탐정(探偵) 또는 사립탐정으로 칭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인탐정, 민간조사자, 민간조사원 등 유사한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

우선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은 손상철(2005)과 이인기의원의 법률안(2008)에서 채택되어 사용하고 있다. 먼저 손상철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인의 요구에 의하여 비용을 받고 민간인 차원에서 조사업무를 제공하는 이른바 민간조사자(Private Investigator: PI) 또는 사설탐정(Private Detective) 등이 그 상이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민간조사자 개념에 정보의 ‘管理’에 대한 의미를 포함한 민

4) 일부국가(호주, 뉴질랜드 일부 주)에서는 Field Operators(FO: 현장운영자)로 불리고 호주의 NSW 주와 Queensland 주에서는 FO가 Private Inquiry Agent(사설탐정)로 불리기도 한다(이상원·박윤규, 2007: 339).

간조사관(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PIA)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PIA는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보수를 받고 위법하지 않은 범위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의뢰인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요원”이라고 정의하여 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손상철, 2006: 13-15).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에는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관을 ① 의뢰에 의해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②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③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민간조사관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5)</sup>

한편 민간조사관과 유사한 민간조사원이라는 용어는 지난 2005년 9월 이상배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과 2006년 4월 최재천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 그리고 2009년 4월 강성천의원이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민간조사관 혹은 민간조사원이라는 명칭보다는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sup>6)</sup>을 선호하는 견해들도 있다(강영숙, 2006; 장석현·송병호, 2008; 이상훈, 2009). 장석현·송병호(2008: 346-347)는 민간조사원(Private Detective, Private Investigator)에 대해 민·형사사건에 제공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서 국가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개인적인 기반을 전제로 하여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이러한 민간조사원

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 2008. 9. 24) 제2조 1호 바목 및 5조 참조.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J8V0B9N2Z4J1S5J5I9M0S1T1M3O9](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J8V0B9N2Z4J1S5J5I9M0S1T1M3O9) (검색일: 2009. 11. 9)

6) 현행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업자의 금지사항) 6호에서는 정보원,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비업법시행령 별표1의 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 분야에서 탐정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과세기준을 위한 업종분류표에 사실조사 서비스업은 ‘코드 749200 탐정, 경호 및 경비업’으로 분류되어 탐정업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바, 향후 용어 사용에서 관련 법령정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는 민간조사관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민간조사관의 명칭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진상조사팀에서 활동했던 민간조사관과 혼동의 여지를 갖고 있고(강영숙, 2006: 7-8), 민간이라는 의미가 조사의 주체인가 아니면 조사의 대상인가 명확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탐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민간조사원의 명칭 역시 민간조사관의 하부조직 내지 이와 관련한 공조직의 구성원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며, ‘민간’이라는 말에 관존민비적 사고가 함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탈각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사회에서 친숙하게 사용되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이상훈, 2009: 252, 262).

그러나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일시적 쓰였던 민간조사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그 의미상 오해를 지나치게 우려하여 그 명칭 사용까지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 민간조사관에서 ‘민간’이라는 말은 그 자체에서 조사 주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 기업, ‘민간’ 부문 등에서 보듯 학술적·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관련 종사자의 직업적인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또한 비록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더라도 사실조사업 관련 종사자의 직업적 전문성과 아울러 사실조사업이 갖는 일정한 공공적 성격을 국가부분이 인정한다는 점에서 민간조사원 보다는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sup>7)</sup>

7) ‘민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 업계와 학계로부터 부정적 의견이 많을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인조사관(公認調査官)이라는 명칭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 2. 민간조사관 제도 관련 법안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는 이인기의원이 18대 국회(2008-2012)에 들어서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1001)이 있다. 동 개정법률안은 2008년 9월 24일 제안·접수되어 2008년 10월 6일 소관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2월 23일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현재 위원회심사 단계에까지 와 있는 상태이다.

이 개정안은 민간조사업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법제도화 하려는 방향에서 제안된 것이나, 참고로 이와는 달리 독립 법안인 ‘민간조사업법안’의 형태로 제출된 경우도 있다. 즉 이인기의원의 대표발의안과 유사한 취지의 민간조사업법안이 제17대 국회(2004-2008)에서 발의되어(이상배의원 대표발의, 2005. 9. 8)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2007. 4. 16)한 바 있으나, 논의가 더 진척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민간조사업법안에는 최재천의원안(2006. 4. 5)이 있었고, 제18대 국회에는 2009년 4월 강성천의원안(2009. 4. 10) 등이 있다.

이인기의원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8)</sup>

가.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를 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민간조사업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

---

8) 각주 5) 참조.

-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민간조사업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성실의무,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금지 의무, 허가증의 대여 금지 의무, 허가증의 게시 의무, 수임부 작성·보관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 라.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마.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방법·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의3 신설).
- 바.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 사.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안 제18조의5 신설).
- 아. 민간조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이를 위한 청문을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의2 신설 및 제21조)
- 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차.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6조).
- 카. 민간조사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조).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특히 민간조사관의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이인기의원 개정안 중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관련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민간조사관의 정의	<p>제2조 5호                      “민간조사관”이란 제1호바목의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 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제1호바. 민간조사업무 : 의뢰에 의해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과약,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과약,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p>
민간조사관의 결격사유	<p>제18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시험 시행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p>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p>제18조의3                      ① 경찰청장은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민간조사관 교육	<p>제18조의5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p>

먼저 제2조 5호에는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민간조사관이라고 정의하고, 제18조의2 민간조사관의 결격사유에서는 민간조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또 제18조의3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에서는 ① 경찰청장이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②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18조의5에서는 민간조사관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 III. 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론적 검토

#### 1. 외국의 민간조사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

##### 1) 미국

미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로서 경찰제도도 자치제 경찰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조사제도 역시 각 주마다 자격요건, 시험 및 면허취득제도, 교육훈련제도 측면에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sup>9)</sup>

##### ① 자격요건

민간조사 자격요건을 보면 각 주별로 약간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미시간(Michigan) 주의 경우를 보면,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i) 미국시민권자,
- (ii) 25세 이상의 연령,
- (iii) 고졸 혹은 동등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로서,
- (iv) 일정 범죄<sup>10)</sup> 경력이 없어야 하며,
- (v)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어야 한다. 즉 ㉠ 다

---

9) 이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민간조사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 소개는 이상원·박윤규(2007), 이상원(2008)의 연구를 참조하였음.

10) 예컨대 ㉠ 부정행위 또는 사기 ㉡ 정보나 증거의 무허가 누설 또는 매매 ㉢ 미연방 혹은 각주의 경찰관이나 직원 사칭 ㉣ 위협무기의 불법사용, 운반 혹은 소지 ㉤ 2개 이상의 음주관련 범죄 ㉥ 공중보건 법령하의 규제약물사용 ㉦ 폭행 ㉧ 미연방군 복무중 불명예 제대 등이다.

른 주에서 독립적인 민간조사업에 합법적으로 종사 ㉠ 조사업 운영의 허가증명서 보유자의 피고용인으로서 민간조사업에 종사 ㉡ 도시, 군, 주정부 또는 미연방 정부의 수사관, 형사, 또는 경찰관 ㉢ 정부정식인가 대학의 경찰행정, 형사법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등이다.

이밖에 (vi) 정부보증 채권공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뉴저지주(New Jersey)의 경우 Private Detective Act of 1939 라는 성문법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자격요건을 보면 25세 미만자에게는 면허가 발급되지 않고, 개인 또는 회사의 구성원이나 법인의 직원이나 관리자 중 적어도 1명이 조사요원 또는 주, 카운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사요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을 시에도 면허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어느 분야에서든지, 중범죄나 위반사항을 범한 자<sup>11)</sup>와 그로 인해 초래하는 법률상의 실격으로서 유죄선고 후에 뒤따르는 행정사면을 받은 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경우, 민간조사 자격요건으로 (i) 만 18세 이상의 연령 (ii) 캘리포니아주 사법부와 FBI의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다.

이처럼 미국은 각 주마다 상이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만 일반적으로 18-25세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조사업무관련 경력을 가지며, 또한 범죄 경력이 없고 도덕적 품성을 지닌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시험과 면허

11) 주요한 대상은 ㉠ 권총이나 기타 위험 무기의 불법사용, 운반 또는 소지 ㉡ 강도용 연장을 제작 또는 소지 ㉢ 장물취득 ㉣ 건물에 불법 침입 ㉤ 탈옥 원조 ㉥ 습관성 마약의 불법소지 또는 유통 ㉦ 주 경찰청장이 민간조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거부한 자 등이다.

뉴저지주, 인디애나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등 대부분의 주는 면허 시험 없이 주 정부내 거주자인 주민들에게 일정자격만으로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민간조사업을 원하는 개인, 조합, 법인 등은 주 경찰청장으로부터 사업운영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신청해서 주 법집행기관 및 FBI 조회를 통해 조사결과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은 면허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일정 연령 이상으로, 범죄전과가 없고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으며, 채권공탁·보험 등 재정보증이 담보되어 있는 정도의 요건만 갖추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그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워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요건 이외에 경찰학과목이나 형법, 사법행정 등의 과목을 포함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3년 또는 6천 시간 동안 사립탐정 사무소에서 연수를 받은 경력이 있어야 면허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황정익, 2005: 38). 이러한 일정경력 요구 외에 2시간의 객관식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70점 이상의 취득자만 합격통보를 받게 된다. 시험내용은 법률(헌법, 형법, 사설탐정법)과 규정(규칙), 전문기술(무기사용관리법, 살인·방화·절도·사기 등 각 분야의 실무에 관한 수사기법, 사건처리,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보고서 작성), 인터뷰, 증거수집 및 보존, 위장수사, 감시 등으로서 실제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광범위하게 평가한다.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을 요하기 때문에 응시자중에는 전현직 수사관이 많으며 실제 미국의 경우, 경찰, 법집행기관의 수사관, 군헌병 출신 등이 은퇴 후에 면허를 취득하여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무시험 면허 발급지역의 면허는 타 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일부 주정부는 면허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관할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③ 교육훈련

미국 민간조사제도는 기본 자격요건 외에 일정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주에 따라 면허가 발급되거나 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에 대해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업무나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민간조사교육기관(PI Academy)에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고 경력을 쌓거나,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 교육훈련은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조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펜실바니아주 Lion Investigation Academy의 예

Lion Investigation Academy는 전문대학과정에 준하는 2년간(4학기) 1600시간의 Investigation & Security Associate Degree 연수교육을 통해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시험을 거쳐 민간조사관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 3학점씩 20개 과목의 총 60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이 등록하기 위해서 응시자는 고교 졸업을 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 윤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각 학기별 교과목과 학점, 시간은 <표 2>와 같다.

**<표 2> Lion Investigation Academy의  
AST(Associate in Specialized Technology) Degree 과정**

학기	교과목	학점	시간
1학기	사설탐정개론	3	40
	감시/미행기법	3	60
	응용시큐리티 I	3	80
	심문조사기법과 절차	3	80
	심리학개론	3	100
2학기	조사실무 I	3	80
	특수업무	3	80
	민간조사	3	70
	통신장비	3	100
	사회학개론	3	100
3학기	고소사건조사	3	80
	조사실무 II	3	80
	응용큐리티 II	3	80
	시큐리티예방산업론	3	80
	심리학	3	100
4학기	위장조사	3	60
	증거사법절차	3	80
	응용시큐리티 III	3	80
	조사실무 III	3	70
	사회학	3	100
<b>총 4학기</b>	<b>20과목</b>	<b>60학점</b>	<b>1600</b>

자료: Lion Investigation Academy 내부자료(이상원, 2007: 345 재인용)

Lion Investigation Academy에서 AST Degree과정을 마치고 졸업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4학기 평점이 2.0이상이어야 하며 3년 안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 캘리포니아주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의 예

캘리포니아 주 소재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는 CMI(Certified Master Investigator) Trai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0주 코스로서 매주 40시간씩 총 400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주별 교과목과 시간은 <표 3>과 같다.

<표 3>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의 CMI Training Program

주	교과목	시간
1주	인터뷰기법과 보고서작성요령	40
2주	감시기법	40
3주	개인 상해사건조사 I	40
4주	개인 상해사건조사 II	40
5주	소환장송달 법정절차	40
6주	실종자 찾는 요령	40
7주	경력조사	40
8주	재산찾기와 회수요령	40
9주	범죄수사기법	40
10주	법과 면허제도	40
<b>총 10주</b>	<b>10개 과목</b>	<b>400시간</b>

자료: Nick Harris Detective Training Academy 내부자료, 2006(이상원, 2007: 346 재인용)

2) 영국

① 자격요건

영국에서 Private Investigator는 사람, 사람의 활동 또는 소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시, 질문, 조사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Section 1). 영국에서도 미국과 같이 민간조사관이 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업무나 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전직경찰이나 헌병 수사관, 정보기관 출신들이 민간조사관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의 전문기법이나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연수를 받고 이러한 연수를 통하여 국가 면허국에서 발급하는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NVQ: 국가직업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sup>12)</sup>

영국에서 민간조사관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서는 만 18세 이상자로서 신원증명서, 범죄경력 증명서<sup>13)</sup>, 탐정으로서의 적합한 능력보유를 요구한다.

## ② 면허

영국의 민간경비산업법(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2001) 제3조에 의하면 영국에서 민간조사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 민간경비산업법에는 민간조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경비산업분야의 면허권한은 민간경비산업 면허국(Security Industry Authority, SIA)에 있기 때문에 민간조사면허는 SIA에서 발급된다.<sup>14)</sup>

12) NVQ는 특정직업별로 대상자가 일정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NVQ는 5단계로 구성되며 국가직업 면허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되고 여러 공인된 평가기관에서 시험을 주관한다. 영국에서는 2006년부터 탐정업에 대해서도 면허제도가 시행되고 NVQ 3 등급을 취득해야만 민간조사업업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13) 유죄판결, 경고가 2년간 없어야 하고 중대범죄(폭행, 무기, 마약, 절도, 관명사칭)의 경력이 5년간 없어야 함.

14) SIA는 민간경비산업분야의 인가와 승인에 관련된 임무, 이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활동과 효율성 감시,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훈련기준, 채용관리의 수준설정과 승인, 민간경비산업 기준의

### ③ 교육훈련

영국의 경우, 교육훈련은 전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일  
정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Martin Gill and  
Jerry Hart, 1997). 영국조사관협회(The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에서는 여러 종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사교  
육과정(Investigation Course), 갈등관리교육과정(Conflict Management  
Course), 집달리교육과정(Bailiff Course), 감시교육과정(Surveillance  
Courses), 도보 및 차량감시 고급과정(Advanced Foot and Mobile  
Surveillance), 전자감시과정(Electronic Surveillance), 목격자 증거수집과  
정(Professional witness Evidence) 등이 개설되어 있다(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2006). 그중에서도 전문조사과정(Professional  
Investigation Course)과 감시과정(Surveillance Course)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 ● 전문조사과정(Professional Investigation Course)

전문조사과정은 2주간의 과정으로서 이 코스는 민간조사관이 되기 위  
한 필수적인 정보를 습득하도록 편성되어 있다(<표 4>).

2주간에 배우는 교과목은 조사의 유형, 보고서 작성요령, 진술, 소환장  
송달절차, 감시기법, 추적기법, 장비운용기법, 경찰과 형사증거의 수집,  
자료보호, 현장보호, 신분보고(status reporting), NVQ제도 등 80시간의  
교육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유지와 향상을 위한 권고와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4> 영국의 전문조사과정

기간	교과목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의 유형</li> <li>▶ 진술</li> <li>▶ 감시기법</li> <li>▶ 장비운용기법</li> <li>▶ 자료보호</li> <li>▶ 신분보고</li> <li>▶ 법적 절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작성요령</li> <li>▶ 소환장송달절차</li> <li>▶ 추적기법</li> <li>▶ 경찰과 형사증거의 수집</li> <li>▶ 현장보호</li> <li>▶ NVQ(국가직업인증)제도</li> </ul>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내부자료, 2006(이상원, 2007: 348 재인용)

● 10일 감시과정(Surveillance Course)

이 프로그램은 10일 과정으로서, 조사팀의 일원으로서 규정에 의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과정은 4일 과정 프로그램의 연장이며, 교육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 도보 및 차량 감시분야의 NVQ level3 자격이 부여된다(<표 5>).

<표 5> 영국의 10일 감시과정(Surveillance Course)

기간	교과목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작성과 브리핑요령</li> <li>▶ 위장비디오 및 사진촬영기법</li> <li>▶ 전자감시기법</li> <li>▶ 고정감시기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도보 및 차량감시기법</li> <li>▶ 관련법규와 증거수집요령</li> <li>▶ 위성차량추적이법</li> <li>▶ 고급소송절차</li> </ul>

자료: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내부자료, 2006(이상원, 2007: 349 재인용)

10일 감시과정의 교과목은 계획작성과 브리핑요령, 고급도보 및 차량

감시기법, 공공수송기관내의 감시기법, 위장 비디오 및 사진촬영기법, 관련 법규와 증거 수집요령, 전자감시기법, 위성차량추적기법, 고정감시기법, 고급소송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호주

#### ① 자격요건

자격증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달된 호주에서는 민간조사분야 역시 자격제도(자격증)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조사관은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Security Provider Act 1993).

호주에서 민간조사관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각 주마다 약간씩 상이한데 New South Wales 주는 The Commercial Agents and Private Inquiry Agent Act 2004, Queensland 주는 The Security Providers Act 1993, Victoria 주는 Private Security Act 2004, Western Australia 주는 The Security and Related Activities Act 1966을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Queensland 주의 예를 들어보면(Security Provider ACT 1993), 만 18세 이상자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책임자에 의해 인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며, 면허소지에 적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Victoria 주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자로서,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CertificateⅢ 또는 그 이상의 Certificate을 이수해야 하고, 전과조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시큐리티 분야는 6등급 18개의 자격체도로 운영되는데, 자격1급(Certificate I), 자격2급(Certificate II), 자격3급(Certificate), 자격4급(Certificate IV), Diploma, Advanced Diploma 등이다. 민간조사제도 역

시 3개의 자격제도, 즉 민간조사관 2급, 민간조사관 3급, 민간조사관 4급으로 운영된다.<sup>15)</sup>

## ② 면허

호주 시큐리티의 주산업분야는 경비(Guarding), 출입접근 시큐리티(Access Security), 사서탐정 (Investigative services), 시큐리티 사업관리(Security business management)로 분류된다(Western Australia Asset Secur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 Kit, 1999). 또 시큐리티 제공자는 군중관리자(Crowd Controller), 시큐리티 경비원(Security Officer), 민간조사관(Private Investigator), 시큐리티회사(Security Firm)로 구분된다(Security Provider ACT. 1993). 이 중 시큐리티 제공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허가 필요한데 그 면허는 군중관리자(Crowd Controller) 면허, 민간조사관 면허, 시큐리티경비원 면허, 시큐리티회사 면허이다. 주에서 민간조사관의 면허는 New South Wales 주, Victoria 주, Western Australia 주에서는 관리청은 주 경찰이기 때문에 면허는 주 경찰국에서 발급되고 통제되어진다.

## ③ 교육훈련

호주에서는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에서 제시하는 기본틀 내에서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자격증 발급에 대한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책임은 등록된 훈련조직이나 법규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조직에 의해 수행된다. 예로서, Security Academy, TAFE, Security

---

15) AQTF(Australian Qualification Training Framework)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록된 훈련조직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정된 표준절차를 제공한다. 각 등록된 훈련조직은 주어진 훈련시간과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발부하고, 관련된 기록 및 행정적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Institute, Private Investigator Academy 등이 해당된다. 호주에서 민간조사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에서 허가된 사설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은 후 주 정부에서 위탁한 사설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certification)을 발부받은 후 주 경찰국에서 면허를 신청하면 된다. 민간조사관들의 활동범위는 자신의 면허를 취득한 주에서 제한되지만 각주에 일정세금을 납부하면 다른 주에서도 민간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호주에서 훈련기관의 교육훈련시간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중 Western Australia의 예를 들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Western Australia의 민간조사관 과정

민간조사관 2급 교과목(시간)	민간조사관 3급 교과목(시간)
정보수집방법 선택(16)	정보수집방법 선택(16)
서면보고서작성 및 편집(20)	서면보고서작성 및 편집(20)
법정증거 준비(16)	법정증거 준비(16)
법정증거 제출(20)	법정증거 제출(20)
직업적 건강과 안전(10)	직업적 건강과 안전(10)
수사에 의한 증거수집(30)	소규모 팀 지휘(20)
인터뷰방법과 진술(30)	직원감독(20)
총 7개 과목(142시간)	현장운용의 조직과 모니터(20)
	감시에 의한 정보수집(30)
	장비선택과 차량운용(30)
	전문정보수집장비의 선택과 보관(40)
	정보의 저장과 보호(40)
	고객과의 관계 유지(20)
	총 13개 과목(302시간)

자료: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ining and Employment, *Asset Security Training Package Implementation Kit*, 1999(이상원, 2007: 351 재구성)

즉 민간조사관 2급은 142시간, 민간조사관 3급은 최소 302시간이며, 민간조사관 4급은 최소 622시간 교육시키도록 되어있다.

먼저 민간조사관 2급의 경우 교육훈련 과목은 총 7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정보수집방법 선택 16시간, 법정에 증거제출 20시간,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10시간, 실제 수사에 의한 증거수집 30시간, 인터뷰 방법과 진술 30시간 등으로 총 142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민간조사관 3급 경우 교육훈련 교과목은 1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정보수집방법 선택 16시간, 서면보고서 작성 및 편집 20시간,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준비 16시간, 법정에 증거제출 20시간, 소규모 팀에 대한 지휘 20시간, 직원감독 20시간, 현장운용의 조직과 모니터(감시)20시간,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10시간, 감시에 의한 정보수집 30시간, 장비의 선택과 감시차량운용 30시간, 전문적 정보수집 장비의 선택과 획득, 보관 40시간, 정보의 저장과 보호 40시간, 고객과의 관계유지 20시간 등으로 총 302시간을 이수토록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조사 분야의 감독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호주 등의 민간조사제도와 그 밖의 주요 국가에서의 민간조사제도 현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외국의 민간조사제도 현황

국 가	면허 제도	주 요 내 용
미 국	있음	주 마다 상이하나 미국 시민권 소지자로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사경력,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 등 일정 자격을 요구함
영 국	없음	국가에서 발급하는 국가직업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사무실을 열어 운영할 수 있음
호 주	있음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일정 수준이 되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함
프랑스	있음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외국인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나 자국에서 활동할 경우 프랑스 면허취득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독 일	있음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법원에서 이론, 실무, 법률, 법과학 등을 6개월 이상 교육받은 후 법원에서 발급한 면허를 받아 활동하고 취득된 면허는 국가에서 공인하며 면허취득자에게 준사법권이 부여됨
스페인	있음	스페인 국적을 보유하고 18세 이상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최근 2년 내 공직에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제한
일 본	없음	특별한 면허나 자격 없이 신고제로 자유롭게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 法律第60号)이 제정되어 2007. 6.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수정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참고자료)”,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J8V0B9N2Z4J1S5J5I9M0S1T1M3O9](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J8V0B9N2Z4J1S5J5I9M0S1T1M3O9)(검색일: 2009. 11. 9); 日本警視廳,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關する法律の施行について”, [http://www.keishicho.metro.tokyo.jp/tetuzuki/tantei/tantei\\_com.htm](http://www.keishicho.metro.tokyo.jp/tetuzuki/tantei/tantei_com.htm)(검색일: 2009. 11. 9)

## 2. 국내 타 직역의 자격시험 제도

입법안 중 민간조사관의 자격요건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의2(결격사유)와 제18조의3(민간조사관 자격시험)에 규정되어 있다. 즉 안 제18조의3 민간조사관의 자격시험에서는 안 제18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민간조사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의 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민간조사관과 비교될 수 있는 국내의 타 직역(법무사, 세무사, 경비원, 관세사)에서의 국가자격시험제도를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국내 타 직역 자격시험제도

직 종	제1차 시험 면제	면제 근거법률	응시자격요건
법무사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	법무사법 제5조의2	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세무사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군경리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	세무사법 제5조의2	법 제4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경비지도사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등	경비업법 제11조, 시행령 제13조	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관세사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시행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관세사법 제6조	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법무사의 경우 법무사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sup>16)</sup>가 없는 자로서 법원·헌법재판소·검찰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sup>17)</sup>가 없는 자로서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군경리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경비지도사의 경우는 경비업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sup>18)</sup>가 없는 자로

- 
- 16)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7)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제2호 - 제10호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停職)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서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등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등에 대해서는 역시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관세사의 경우는 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sup>19)</sup>가 없는 자로서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시행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서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 
-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4.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 19)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6.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자를 제외한다.
  -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한 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IV.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제도의 모색

### 1.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모델

#### ① 자격요건

입법안 제18조의2는 민간조사관의 결격사유를 민간조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유사하게 규정하면서<sup>20)</sup>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만 18세 미만인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점은 첫째, 국적보유 문제이다. 위 인기의원 입법안에는 국적보유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일부 외국(미국, 스페인 등) 사례에서 국적보유를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며, 한편으로 OECD 가입에 따라 민간조사 시장이 개방된 상황이므로 국적보유 여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논리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 단계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민간조사관의 범규준수 감독 및 윤리성 관리를 위해 일단 내국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1)</sup>

둘째, 연령상의 자격요건 문제이다. 연령요건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8-25세, 호주는 18

2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를 민간조사관의 결격사유로 동일하게 규정함.

21) 자격요건과 관련, 외국 자격증의 인정도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공인시험을 통과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험 없이 경력만으로 자격취득이 되는 지역, 등록만으로도 자격취득이 되는 지역, 공인자격 없이 사설교육기관의 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한 지역 등 민간조사원의 자격수준은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상원, 2007: 356). 특히 1-3주의 단기 연수과정과 소정의 비용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국가의 경우가 있으므로 외국 자격증의 국내자격증의 전환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업무의 공익적 성격을 이유로 들어 최소한 병역필의 연령(2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이승철 2008; 이상원, 2008). 그러나 연령 자체 혹은 군경력만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담보한다고는 볼 수 없는 바, 경비업법에서 민간경비원의 결격사유로 18세 미만으로 이미 정한 것과 같이 18세 이상자에게 민간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범죄경력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입법안들과 외국의 예에서도 민간조사관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특이한 사항은 탐정업법 제3조 4호에서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폭력단가입자는 민간조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범죄경력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프랑스, 영국의 경우도 범죄경력을 민간조사관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조사관의 사회적 책임성·윤리성 확보의 기초로서 그 결격사유에 범죄경력자나 조직폭력단 가입경력자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장석현·송병호, 2008: 355-356).

## ② 시험

입법안 제18조의3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에서는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첫째, 시험과목의 범주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시험을 실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보면, 그 시험과목은 법규과목(헌법, 형법, 민간조사업법규) 외에, 전문성 관련과목으로서 수사기법, 사건처리, 상황판단, 대처능력, 인터뷰기법, 증거수집 및 보존, 위장수사, 감시기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캘리포니아주 민간조사관 시험에는 전문성 외에도 윤리성을 측정하기 위한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 점수 100점 중에는 기획(planning) 19%, 정보(information) 22%, 감시(surveillance) 4%, 분석(analysis) 15%, 보고(reporting) 18%, 공판준비(trial preparation) 10% 외에 민간조사관 윤리표준 준수능력(ability to comply with ethical standards of private investigators)을 평가하는 윤리(ethics) 점수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윤리성 평가문제들은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사과정에서 개인적 편견(personal bias) 관리전략 지식 등에 관한 것들이다(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of California Gov.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Examination Outline for Private Investigators*).<sup>22)</sup>

영국의 경우, 민간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으나 민간인들이 민간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아카데미에 등록하여 연수를 받아야만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다. 민간조사 전문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은 조사의 유형, 보고서 작성요령, 진술, 소환장 송달절차, 감시기법, 추적기법, 장비운용기법, 경찰과 형사증거의 수집, 자료보호 등의 실무 전문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민간조사관이 되기를 원하는 개인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전문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증을 받은 후 각 주경찰에 면허를 신청하고 있다. 호주 전문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은 정보수집방법, 보고서작성, 법정에서 사용키 위한 증거수집, 인터뷰 방법과 진술, 감시기법, 정보수집과 보호, 고객과 관계유지 등 실무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시험과목이나 교육 교과목은 우선 전문성 확보를 위

22)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 안전조사국의 민간조사관 시험 안내를 위한 동자료는 2004년 1월 공시된 것으로서 다음의 인터넷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sis.ca.gov/exams/studyguide\\_pi.pdf](http://www.bsis.ca.gov/exams/studyguide_pi.pdf), (검색일: 2009. 12. 10)

해 민간조사 관련 법규 등 이론과목과 정보수집 및 감시기법, 사법절차, 보고서작성 등을 포함하는 실무과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윤리성 확보 측면에서 비밀유지와 편견관리에 관한 지식의 측정, 고객과 관계유지 등에 관한 과목들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조사 시험과목 역시 이를 참조하여 전문성(이론과 실무) 및 윤리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험과목은 민간조사분야의 광범한 다양성 수용과 전문성 제고를 고려하여 이를 자격증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경비지도사 시험의 경우에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가 있어서 공통과 선택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민간조사관 시험도 일반조사분야, 경제금융조사분야, 사이버조사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시험을 시행하도록 한다. 일반조사분야는 민간조사 분야 중에서 사람과 물건의 소재에 대한 파악과 피해사실조사 등 일반사실조사를 전문분야로 한다. 경제금융조사분야는 보험조사, 기업거래조사, 재정금융조사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또한 사이버조사분야는 인터넷 피해 확인 및 원인조사 등을 전문으로 한다.<sup>23)</sup>

자격시험은 1-3차에 걸쳐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병합실시하고, 시험 합격자에게 기본교육 혹은 연수 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1차 시험은 이론과목으로 구성하고, 2차 시험은 해당 실무 및 전문과목으로 구성한다.

이상의 이론 및 실무, 자격 세분화, 1-2차 시험 구분 등을 고려한 시험 과목의 예를 들면 다음 <표 9>와 같다.

23) 사이버조사분야는 현재 인터넷 보안업이 경비업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영역에서 타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표 9> 민간조사관 시험과목(안)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택형	선택형 및 단답형
민간조사관(일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조사학 (민간조사관윤리 포함)</li> <li>○ 민간조사법 (형사법 등 관련법 포함)</li> <li>○ 범죄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조사운용론</li> <li>○ 정보 및 조사실무</li> </ul>
민간조사관(경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조사운용론</li> <li>○ 경제금융조사실무 (보험, 회계 등)</li> </ul>
민간조사관(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조사운용론</li> <li>○ 사이버조사실무</li> </ul>

즉 일반조사, 경제금융, 사이버분야 등으로 세분하여 시험을 시행하되 1차 시험 선택형 공통과목은 민간조사학, 민간조사법, 범죄학으로 한다. 특히 민간조사학 과목에서는 편견을 지양한 중립적이고도 객관적인 시각(neutral and objective perspective)에서의 조사 전략(strategies), 조사과정에서 의뢰인 요구사항들의 적법성(legitimacy) 확인을 위한 지식, 비밀유지와 정보공개(disclosure)의 법적 지식 등을 평가하는 민간조사관 윤리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2차시험은 선택형 및 단답형으로 하여 민간조사운용론을 공통으로 하고 전문 분야별로 정보 및 조사실무, 경제금융조사실무(보험, 회계 등), 사이버조사실무 등으로 구성한다.

자격시험과 관련되어 검토해야 할 것으로 둘째는 시험면제의 문제이다. 입법안에서는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대상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자격시험(법무사, 세무사, 경비원, 관세사 등)과의 형평성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무사 시험의 실시 여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하여 법원·검찰 등의 공무원만으로도 충원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며<sup>24)</sup>, 이를 계기로 법무사 시험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매년 시행하되, 일정 경력의 공무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경력기간의 획정에서 타 직역의 경우 통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조사관도 이와 동일하게 관련분야(실무 및 연구) 10년 이상 경력자로 하는 것이 타 직역과 형평성 및 전문성 인정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2. 민간조사관 교육훈련 모델

입법안 18조의5에서는 민간조사관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민간조사교육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민간조사관은 기본적인 요건 외에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허를 발급하거나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에 한하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나 수사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민간 아카데미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 경력을 관리하거나 시험에 합격하여 민간조사관 면허를 취득하는 경로를 밟아야 한다. 펜실바니아주의 경우 전문대학과정에 해당하는 2년간 1,60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은 후 주정부가 인정하는 민간조사관 면허

24) 1990. 10. 15 89헌마178.

를 취득하게 되어 있다. 즉 2년간 4개 학기 15학점씩 6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 민간조사관의 교육훈련은 급수에 따라 2급 142시간, 3급 302-642시간, 4급 622-642시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고 사설 아카데미에서의 교육내용은 민간조사관 2급의 경우 정보수집방법, 서면보고서 작성, 법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 및 제출, 직업적 건강과 안전유지, 범죄수사기법, 인터뷰방법과 기술 등이다.

영국의 경우 민간조사관 채용시 심리검사와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도덕적 결함이나 성격적 결함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적성검사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데 개인의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바, 민간조사관도 이러한 심리검사와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민간조사단체는 민간조사관에게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교육훈련은 민간조사업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요건이고, 또한 민간조사업의 인증단체가 민간조사관의 교육훈련을 평가·심사하고 있다(장석현·송병호, 2008: 357).

이상의 외국 사례의 함의 즉, 민간이 주체가 된 교육훈련시간 확보와 실무전문교육 등의 시사점을 볼 때 우리나라 민간조사관 교육훈련 역시 민간 유관단체 혹은 아카데미가 중심이 되어 민간조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시간과 과목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관시험(1차, 2차)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훈련은 우선 훈련시간 측면에서 미국의 전문대학과정과 같은 훈련기간은 필요치 않으나 호주와 같이 교육시간은 최소 142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교육훈련 과목은 민간조사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고려해서 과정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관은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소재가 불명한 사람과 물건에 대한 소재 파악, 합법적인 기초자료나 정

보의 사실 확인 등 일반적인 단순업무에서부터, 사망·상해·방화·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사실조사, 법원 등에서 사용될 증거자료의 확보, 보험범죄·지적재산권침해 관련 사실조사, 사이버범죄 등에 의한 피해 및 원인 조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은 일반적이고도 공통적인 기초 직무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과목과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경제금융과 사이버 조사 등 보다 심층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각각의 유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기본교육훈련 이수 후에 추가적인 전문직무과정을 편성하도록 한다.

최소 교육시간 확보, 전문성과 윤리성, 일반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교육훈련 교과과정을 편성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민간조사관 기본교육훈련 교과과정(안)

과목명	시간	과목명	시간
민간조사와 인권	3	조사장비운용기법	15
민간조사관의 직무윤리	6	현장조사활동	15
의뢰인만족(CS)	6	사건분석 및 현장재구성	6
관련 법규의 이해	15	증거수집과 분석기법	15
사법절차실무	6	상담기법 및 진술분석	15
정보수집 및 관리의 이해	12	범죄심리분석	6
경제금융조사의 이해	3	조직경영관리	6
정보보안의 이해	3	의뢰사건 개인연습	6
실종자 탐문기법	6	조사보고서 작성실습	3
<b>합계</b>	<b>147</b>		

민간조사관 교과과정은 전체적으로 총 18개 과목에 147시간으로 설계하여 보았다. 그 중 민간조사관 직무윤리 및 소양과목으로는 민간조사와 인권(3), 직무윤리(6), 의뢰인만족(5) 등으로 3개 과목 15시간을 배정하였다.

실무과목으로는 관련 법규의 이해(15), 사법절차실무(6), 정보수집 및 관리의 이해(12), 경제금융조사의 이해(3), 정보보안의 이해(3), 실종자 탐문기법(6), 조사장비운용기법(15), 현장조사활동(15), 사건분석 및 현장 재구성(6), 증거수집과 분석기법(15), 상담기법 및 진술분석(15), 범죄심리분석(6), 조직경영관리(6), 의뢰사건 개인연습(6), 조사보고서 작성실습(3) 등 15개 과목 132시간을 배정하였다.

민간조사관의 기본교육 외에 경제금융과 사이버정보보안 분야 등에서는 별도의 전문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인 바, 예컨대 경제금융조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의 경우 자금추적 수사방법, 회계장부의 이해, 기업운영과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지적재산권위반조사, 통화·유가증권위변조조사, 보험범죄조사, 불법사금융(대부업 등) 조사 등의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의 실시기관은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사례와 같이 관련단체나 아카데미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기관이 관리감독은 담당하지만 방대한 교육훈련과정까지 실시하기에는 효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민간경비교육훈련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인 경찰청에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진과 시설 등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민간조사관련 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등)을 지정하여 위탁교육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민간조사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민간조사관 제도 도입 논의의 기초로서 명칭의 문제와 민간조사관 제도 관련 법안 내용, 외국의 민간조사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 국내 타 직역의 자격시험 제도 등을 검토하고 제도 안착의 핵심인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적정 모델을 구상해보았다.

민간조사업의 불법행위,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민간조사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실질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조사업 자체를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민간조사업의 탈법위험은 통제하되 영업 자체의 효율성 및 성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 요구에 의한 조사업 시장의 자연스러운 확대가 유도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민간조사관의 자격은 민간조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지식, 관련법규의 이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민간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진국의 현실임을 볼 때, 한국의 민간조사제도 역시 이러한 측면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를 위한 경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문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전문성을 취득하고 응시자격을 갖추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민간조사업은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명확히 알아내어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자유시장과 경쟁(competition)은 바로 이러한 시행과정상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 알 수 없는 사실의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경쟁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무지(unknown ignorance), 구조적 무지(constitutional ignorance)의 상황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발견의 절차(discovery procedure)로서 경쟁의 활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Hayek, 1978).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쟁이 발견의 절차를 밟아 민간조사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유인(incentive) 제도가 고안(design),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조사업은 향후 전문영역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기만 한다면 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민간조사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사업 관련 범규의 자율적 준수(Compliance) 업체에 대해서 행정절차의 간소화, 감독규정의 완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선택권 등을 마련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사제도가 그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적 평가제도로써 안착하기 위해서는 도입의 폭과 속도 면에서 점진주의적인(gradualism)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민간조사제도를 보다 넓은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을 수 있겠으나, 타 직렬 영업범위 조정과 관련법제 정비, 시장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제약으로 급진적 제도변화가 쉽지만은 않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 제도화는 점진적인 수순(sequence)을 밟아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008. 9. 24)”,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J8V0B9N2Z4J1S5J5I9M0S1T1M3O9](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R0J8V0B9N2Z4J1S5J5I9M0S1T1M3O9)(검색일: 2009. 11. 9)
- 사이버경찰청 법령자료실,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경찰청훈령 제550호, 2009. 7. 31)”, <http://www.police.go.kr/infodata/lawpdsView.do?idx=94426&cPage=5>(검색일: 2009. 12. 10).
- 손상철, 『민간조사학개론』, 백산출판사, 2005.
- 이상원,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2008, pp. 235-253.
- 이상원, 박윤규,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발전방향: 시험제도와 교육훈련 중심(中心)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pp. 337-365.
- 이상훈, “공인탐정제도의 올바른 모델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0호, 2009, pp. 249-270.
- 이승철,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2008, pp. 255-276.
- 장석현·송병호,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2008, pp. 333-365.
- 전대양, “일본 탐정업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및 정책적 함의”,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3호, 2007, pp. 305-337.
- 황정익, 『공인조사(공인탐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5.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Guidelines on the Instruction and Use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Tracing Agents*(2007. 7), <http://www.>

- abi.org.uk/Publications/Guidelines\_on\_the\_instruction\_and\_use\_of\_private\_investigators\_and\_tracing\_agents1.aspx(검색일: 2009. 10. 10)
-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of California Gov.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2008-2009 Legislative Changes to the Private Investigator's Act*, [http://www.bsis.ca.gov/industries\\_regulated/pi\\_act\\_leg\\_chngs.pdf](http://www.bsis.ca.gov/industries_regulated/pi_act_leg_chngs.pdf)(검색일: 2009. 12. 10)
-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of California Gov.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Examination Outline for Private Investigators*(2004. 1), [http://www.bsis.ca.gov/exams\\_studyguide\\_pi.pdf](http://www.bsis.ca.gov/exams_studyguide_pi.pdf),(검색일: 2009. 12. 10)
- Eggertsson, T.,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Hayek, F.A., "Competition as a Discovery Procedure",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Chicago University Press, 1978.
- Hayek, F.A., *The Fatal Conceit*, Chicago University Press, 1988.
- MacHovec, Frank J., *Private Investigation and Security Science*, Charles C. Thomas Publisher, 2006.
- North, D. C.,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Ostrom, E., "An Agenda for the Study of Institutions", *Public Choice*, 48, 1986, pp. 3-25.
- Brandl, Steven G., *Criminal Investigation: An Analytical Perspective*, Boston: Pearson, 2004.
-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 Organization: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No. 87, 1981, pp. 548-577.
- 日本警視廳, "探偵業の業務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ついて" <http://>

[www.keishicho.metro.tokyo.jp/tetuzuki/tantei/tantei\\_com.htm](http://www.keishicho.metro.tokyo.jp/tetuzuki/tantei/tantei_com.htm)(검색  
일: 2009. 12. 20)

책임연구보고서 2009-35

## 민간조사관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

---

발행일 : 2009년 12월 24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